

##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영 주 시

## 영주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7

제출년월일 : 2003.

제출자 : 영주시장

### 1. 개정이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과 내용을 정리하고자 불임과 같이 영주시 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2. 주요골자

- 가. 지방세법시행규칙의 조문순서 변경에 따라 조례상의 조문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11조)
- 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때 시장 군수에게 통보를 그 다음달 말일에서 그 다음달 15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22조의2)
- 다.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27조 제1항)
- 라. 지방세법상 제조담배를 담배로 변경함에 따른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52조 내지 제55조 및 제57조 내지 62조)
- 마.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8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덧붙임.
  - 가. 관련법령(발췌) 1부. 끝

## 영주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영주시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증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를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호”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증 “그 다음달 말일”을 “그 다음달 15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제3목증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2조 내지 제55조, 제57조 내지 제62조증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98조제2항증 “7월 10일”을 “7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영주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그 가액의 1,000분의 6 (4) (생략) 2. ~ 3. (생략)	..... (4)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제5절 담배소비세 제52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라. (생략) 2. 씹는 제조담배 3. 냄새맡는 제조담배	제5절 담배소비세 제52조(과세대상) ① ..... ..... 담배 ..... ② ..... 담배 ..... ..... 1. ..... 담배 가.~라. (현행과 같음) 2. ..... 담배 3. ..... 담배
제53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자는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3조(납세의무자) ① ..... ..... 담배 ..... ..... ② ..... ..... 담배 ..... ..... ③ ..... ..... 담배 ..... ..... ④ ..... ..... 담배 ..... .....

현 행	개 정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54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 표준은 <u>제조담배</u> 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4조(과세표준) ..... ..... <u>담배</u> .....
제55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5조(세율) ① ..... ..... 1. ..... <u>담배</u> 가.~라. (생략) 2. 셉는 <u>제조담배</u> 50그램당 1,040 원. 3. 냄새맡는 <u>제조담배</u> 50그램당 650원. ② <u>제조담배</u> 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 이하의 <u>제조 담배</u> 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1.~2. (생략)
제57조( <u>제조담배</u> 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u>제조담배</u> 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 <u>담배</u> 의 반출신고) ..... ..... <u>담배</u> . ..... ..... ..... ..... ..... ..... 1.~2. (현행과 같음)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



현 행	개 정
<p>이 경우 시장을 수입제조담배의 담배 소비세에 대한 특별징수 의무자로 본다.</p> <p>③ (생략)</p> <p>④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 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 담배..... ..... ....</p> <p>③ (현행과 같음) ④ ..... 담배..... ..... ....</p>
<p>제61조(가산세) ① (생략)</p> <p>1.~4. (생략)</p> <p>5.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1.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p> <p>2.~4.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 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p>	<p>제61조(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 5. ..... ... 담배..... ..... ....</p> <p>② (현행과 같음)</p> <p>1. ..... 담배..... ..... ....</p> <p>2.~4. (현행과 같음)</p> <p>③ ..... ..... 담배..... ..... ....</p>
<p>제62조(납세담보)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p>	<p>제62조(납세담보)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현 행	개 정
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관 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 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제 <u>조담배</u> 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은 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 ..... ..... 담 배.....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제조담배</u> 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 담배 ..... .....
제98(납기) ① (생략)	제98조(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 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u>7월10일까지</u> 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납부하 여야 한다.	② ..... ..... 7월31일 ..... .....

## 관 련 법 령(발췌)

### 【지방세법】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 말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절 담배소비세<신설 1988.12.26>

제224조 (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개정 2001.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1.4.7>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퀄런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2. 씹는 담배

3. 냄새맡는 담배

③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제조과정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4.7>

제225조 (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1.4.7>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1.4.7>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택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1.4.7>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1.4.7>

제228조 (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삭 또는 중량으로 한다. <개정 2001.4.7>

제229조 (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2001.4.7>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퀄련 20개비당 510원. 다만,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퀄련은 20개비당 40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2,60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040원

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650원

②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령세율로 한다. <개정 2001.4.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8.12.26]

제233조 (담배의 반출신고<개정 2001.4.7>)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2001.4.7>

제233조의3 (개업·폐업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제조

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88.12.26]

제233조의5 (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제233조의6 (신고납부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228조 및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의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2001.4.7>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1.4.7>

③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 1995.12.6, 1999.12.28>

④제2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8.12.26]

제233조의7 (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1.4.7>

1.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

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2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4.12.22, 2001.4.7, 2001.12.29>
1. 제231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1.4.7>

제233조의10 (납세담보)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는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4.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제250조 (징수방법과 납기) ①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94.12.22>

②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③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④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를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 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79.12.28, 1994.12.22>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01.12.31개정)

1. 지방세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징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